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험행동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근거 마련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5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험행동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6. 24.
3. 회 부 일 : 2025.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험행동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분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11(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위험행동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 ☐ 먼저 개정안 제30조의11제1항 및 제2항은, 교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긴급조치를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개정안 제30조의11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교직원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피해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학교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¹⁾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²⁾, 교직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는 것을 포함하는 긴급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056호)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6조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³⁾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되나,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3)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것에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의 긴급조치에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교직원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3명(현원 기준)으로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 긴급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시·도 경찰청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1,127	149	66	51	55	29	31	23	9	175	64	57	42	63	63	72	78	83	17
현원	1,133	150	68	47	56	29	32	23	9	185	64	58	42	58	63	71	78	83	17

주: 1. 2024년 12월 기준

2.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현원 기준) 10.7개교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참고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39호)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⁵⁾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

- 아울러 개정안은 제30조의11제2항에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함.

교육감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공·사립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⁶⁾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위험행동 교직원에 대한 후속조치

□ 다음으로 개정안 제30조의11제3항 및 제4항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긴급조치 사항을 보고 받은 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한 후에, 이를 보고 받은 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교직원에게 긴급조치를 한 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분리하는 등의 긴급조치와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에는 공통적으로 교직원을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분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긴급조치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는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화된 후속조치는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와 유사한 성격이 될 수 있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직위해제는 임용의 한 종류로 구분되며,⁷⁾ 국·공립학교(일부 국립학교 제외) 교직원의

7)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으므로,⁸⁾ 사립학교의 경우 교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8)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직원의 임용과 유사한 성격의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요청으로 임용권자가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의 후속조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휴직, 직위해제⁹⁾ 등과 같은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분리조치, 업무배제 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를 규정하는 법률, 조치 사유·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9)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분리조치, 업무배제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44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393호)	안상훈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4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가능(안 제44조제2항)
5	대안교육기관법 (제2208531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신설)
6	사립학교법 (제2208533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53조의6 신설)
7	사립학교법 (제2208807호)	김문수 의원	2025.3.11./ 2025.3.12.	•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58조의3 신설)
8	초·중등교육법 (제2208524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신설)
9	초·중등교육법 (제2209769호)	김대식 의원	2025.4.11./ 2025.4.14.	•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2 등)
10	학교폭력예방법 (제2208139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	학교폭력예방법 (제2211056호)	백승아 의원	2025.6.24./ 2025.6.25.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및 교직원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안 제20조의6) *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긴급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해당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며 신분보장에 대한 제한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직권휴직, 직권면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 분리조치도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교직원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으므로, 112신고 등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부수정 - 긴급 사안의 경우 학교장 선조치 후 교내 위원회 추인, 그 외의 사안은 교내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제출함. 또한, 학교의 명확한 사안 판단 및 긴급 분리 후 제기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긴급 분리 매뉴얼(판단요건, 분리절차, 제지방법, 후속조치 등)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 일부수정 - 긴급조치의 판단기준인 “재산에 중대한 손해의 우려” 등의 표현은 해석이 매우 넓어 현장 판단의 자의성 또는 과잉 대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흥기 사용’, ‘물리력 행사’ 등 객관적·관측 가능한 행위로 요건의 구체화가 요구됨. - 또한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 책임, 보복 우려, 인권 침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오히려 조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 입회, 경위서 작성, 조치 대상 교직원에게 사유 및 방어권 고지 의무화 등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하위법령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 신중검토 - 교직원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특정 학교에 상시 배치되어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교직원 자신 또는 학생 외 타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선도행위를 실시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일부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9